

# 건설관련 법률상담 사례 ①⑥

자료제공 / 권진웅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고문변호사

##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한 경우의 법률적 해결 방안('09.4)

**Q** | 부분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하수급업자가 노무비와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노무비에 대하여는 직접지급요청을 하였고 자재상은 하수급업자를 채무자, ○○기계설비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한 경우의 법률적 해결 방안은?

**A** | 하수급업자에 대한 잔존 공사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되, 노임의 직불지급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노임 부분이 우선하며, 잔존 공사비 한도 내에서 자재상이 하수급업자에 대하여 판결을 받거나 하수급업자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

## 원도급자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대금 해결('09.4)

**Q** |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원도급자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공사를 포기하였고, 보증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잔여공사를 다른 업체에 주고 기왕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방안은?

**A** | 공사도급 계약서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약관 등에서 특별히 보증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기왕의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을 정함이 있다면 그

에 따라 기왕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질 주체가 정해질 것이나,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약정된 바가 없다면 ○○기공으로서의 발주자나 보증시공위탁업체, 건설공제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원도급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법정관리 절차에서 그 채권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09.5)

**Q** |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A**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을 변제받기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서, 점유의 계속성 및 불법점유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 점유를 해오고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공사대금과 관련한 유치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09.5)

**Q** | 공사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A**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법원에 유치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공사현장에 직원을 계속 상주시켜 점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이라는 현수막 등으로 외부에 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진정결과가 나오기 전 원청자와 합의한 후 그 내용 불이행에 대한 합의서 무효 주장('09.6)**

**Q** 원청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이자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에서 그 진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청자와 사이에 합의를 한 후,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지?

**A** 합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한 내용을 취하고, 합의된 금액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며, 추후 어떠한 금액도 지급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위 합의성에 약정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진정을 하거나, 위 합의서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합의서에 기한 나머지 금액과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의 지급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무한지식**

**안전띠, 잘못 매면 포승줄**

‘안전띠는 생명띠’. 긴 설명이 필요없는 표어이다. 실제로 수많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안전띠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킨 일이 많다. 하지만 안전띠를 했다고 해서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안전띠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로, 전투기 조종사용으로 첫선을 보였다. 이후 자동차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속도가 높아지자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도 안전띠를 부착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1936년인데,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이 개통되었을 때 볼보자동차의 한 직원이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처음으로 허리를 조여 매는 2점식 안전띠를 달았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벤츠와 GM사에서 안전띠를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대중화되었다.

안전띠는 성인 남자 몸무게의 서른 배 정도 되는 힘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다. 그런데 안전띠를 맬 때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은 대체로 두가지 정도인 것 같다.

첫째, 안전띠가 꼬인 상태 그대로 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체나 캠페인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막상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무심한 듯

하다. 안전띠의 국제 규격은 폭 4.6cm이다. 그런데 부주의하게 안전띠가 꼬인 채로 매게 되면 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곳으로 충격이 쏠려서 몸에 닿는 부분에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둘째, 안전띠를 배에 걸치는 경우로 이것은 정말 흔한 실수이다. 골반 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뼈 중 하나로 허리 부분의 안전띠는 바로 그 골반 뼈를 이용해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안전띠를 너무 위쪽으로 매면 충격이 골반보다는 배로 쏠리게 되어 결국 장기에 손상을 입게 된다. 배가 나온 사람들은 특히 배 위쪽으로 안전띠를 올려 매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최대한 아래쪽으로 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그밖에 아이들과 탔을 때 안전띠 하나로 두 아이를 매면 외부에서 충격이 전해질 때 아이들끼리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칠 수 있다. 또, 엄마가 아기를 안고 타는 경우 그것은 아이를 에어백처럼 쓰겠다는 것과 다르다. 안전띠가 온전한 생명띠가 되려면 제대로 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정재승의 도전! 무한도전」 중에서

# 노무관련 상담사례 ②

자료제공 / 노동부

## 병가기간의 임금 지급

**Q**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급 받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병가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다만, 노사관계자 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병가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Q** 퇴직일 이전 3개월 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A**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begin{aligned} & ※평균임금(일급) \\ & = [\text{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 간의 임금총액}] \div \\ & [\text{위 3개월 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end{aligned}$$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월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휴업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금품(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으므로 임금이 아님)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Q** | 해외근무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A** | 해외근무수당을 해외파견 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여건에 따라 실비변상비로서 평균임금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된다.

##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지급율을 소급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는지

**Q** |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율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소급하여 변경시킬 수 있는지 여부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발생된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단체협약을 유효하게 변경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 퇴직금제도가 단체협약에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에만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제도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조합원의 반대가 있었다면 단체협약의 갱신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단체협약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 ◉



###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 청바지

19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재단사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청바지를 최초로 만들었다. 그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로 인해 캘리포니아 금광촌에 갔다가 광부들의 옷이 빨리 해지는 것을 보고 단단한 재질의 진(Jeans)으로 바지를 만들었다. 이 바지는 광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1850년대 샌프란시스코까지 소문이 나 각지의 노동자들이 사 입었다. 이 바지는 방울뱀이 싫어하는 인디고라는 콩과 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로 만들었다. 리바이는 이 파란 바지를 블루진이라고 이름 붙였다.

리바이는 질기고 튼튼한 바지의 장점을 광고하기 위해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청바지를 잡아당기는 실험을 했다. 이것은 오늘날 리바이스의 상표가 되었다. 영화배우 제임스 딘, 말론 브랜도, 엘비스 프레슬리 등 반항적인 이미지의 스타들이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 히피 역시 청바지를 반체제 운동의 상징으로 입었다.

#### 신비로운 숫자 9

히브리어에서 숫자 9는 불가사의한 힘을 상징했다.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숫자였고, 그리스어에서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였다. 산크리스트어에서는 최상급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9명의 뮤즈 신, 9개의 십자가, 9인의 명사, 문장이 새겨진 9개의 왕관, 9칸의 지옥, 9일간의 경이로움, 9일간의 굴욕, 고대 999년간의 임대 계약, 9가닥의 채찍…….

이처럼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로 9를 이용했다. 아홉개의 수 123456789에서, 가로로 숫자들의 합을 계산하면 45이다. 그리고 4와 5의 합은 9이다. 또 두 자리 이상의 수를 만든 후, 그 자릿수를 완전히 거꾸로 바꾸어 새로운 숫자를 만든다. 그리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나온 두 숫자를 합하면 언제나 9다. 즉 그 큰수와 작은 수 사이의 차이는 언제나 9의 배수이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

# 판례로 본 건설분쟁 사례 ②

자료제공 / 『알기쉬운 건설분쟁 사례 해설집』(건설경제 신문사 刊)

## ▶ 낙찰자의 장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쟁점	낙찰자의 채권자는 낙찰자가 장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취득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판단	압류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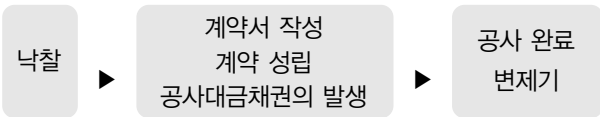
### 낙찰자의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가능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의 낙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청약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그치고 낙찰자인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낙찰 단계에서는 아직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 단계, 낙찰자가 입찰실시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체결권을 가진 단계에서 낙찰자가 훗날 공사도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장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강제집행의 대상인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의 채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제집행여부가 문제되는 단계

대법원은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 단계이지만, 낙찰자가 장래 취득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판례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대법원2002다7527 판결)

## ▶ 입찰금액의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 제재의 가부

쟁점	입찰금액의 착오기재를 주장하고 공사계약 체결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판단	제재는 부당하다.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인 계약체결의 거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입찰서상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인정되어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6호도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다.

**판례**  
 “원고의 대리인이 입찰금액을 60,780,000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재무부회계예규 1201, 04-101) 제10조 제10호 소정의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조달청장)는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함이 마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부정당업자로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대법원 81누366 판결)

**▶ 수급인의 현장소장의 금품제공과 부정당업자 제재**

<b>쟁점</b>	수급인의 현장소장이 공사감독관에게 금원을 공여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가?
<b>판단</b>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서의 증뢰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는다

**증뢰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0호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을 공여한 자가 수급인 자신이 아니라 수급인의 현장소장인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에도 수급인 본인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는가? 현장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그 공사의 하도급업자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자를 위하여 하도급업자의 돈으로 수급인 몰래 증뢰한 것이라면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수급인의 현장소장이 금원을 제공한 행위는 구급인의 지시가 없었다거나 그 돈을 수급인이 마련 해주지 않았더라도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자와 공모하여 그 수급한 공사에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공무원(공사감독관)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하도급업자뿐 아니라 원고 회사를 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 증뢰가 원고 회사의 자금 또는 동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증뢰행위는 공사계약 상대자인 원고 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83누574 판결)  
 ※ 위 판결은 공사 수급인이 원고 회사가 부정당업자제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 중재 판정 사례 ⑭

자료제공 / 대한상사중재원

##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증액) 조정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	공장 신축공사	
신청금액	13,001,842,888원	중재비용 : 54,034,054원
신청일	2003. 9. 30.	
판정일	2003. 4. 23.	
처리기간	206일	
판정금액	9,669,208,510원	

### ① 사건개요

A는 각종 산업설비, 건물, 토목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인이고, B는 홍삼 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다. B는 ○○시에 □□□□ 건설을 위하여 2000. 7. 3. 입찰공고를 하였고, A가 2000. 11. 14.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B는 같은 달 27. A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B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설계·시공병행방

식으로 시행을 요청하여 2000. 12. 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계약은 4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A는 B가 국가계약법상 당연히 반영해 주어야 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요청조차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암반의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발생한 공사비를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B의 편의에 따라 일부 공종을 개산계약서에서 확정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계상해 주어야 할 순공사원가를 제외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A는 이 사건 공사로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A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예상할 수 없었던 암반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요된 불가항력적인 추가비용에 대한 A의 근거 없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22조 제1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

수조정률 방식으로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과 설계·시공병행방식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되는가에 관한 당사자들의 다툼과 관계없이 이 사건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은 2000. 12. 8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준시점과 변경된 지수조정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수행 전 공사부지에 대한 지반조사가 당사자들 간에 상당 수준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지반조사는 그 성질상 제한적 시간 내에 표본추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지반조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느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 연암의 대량발견은 당사자들의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보다는 형평과 선에 따라 책임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이유 있다고 판정하였다.

## 2. 지체상금 반환청구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지체상금 반환청구	
품목	고등학교 신축공사	
신청금액	402,452,540원	중재비용 : 5,193,489원
신청일	2003. 3. 17.	
판정일	2003. 8. 6.	
처리기간	152일	
판정금액	37,918,916원	

### ① 사건개요

A는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2001. 4. 27 B로부터 ○○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위 공사도급계

약에 의한 공사대금의 총액은 5,155,442,000원(그 후 금 4,958,647,100원으로 감액)이고 전체 공사기간은 2001. 6. 20부터 2002. 11. 22까지인데 이를 3차로 나누어 단계별로 계약하였다. B는 A가 1,2차 공사를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준공하였음을 이유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100일의 지체일수를 적용하여 금 379,189,170원의 지체상금을, 제2차 공사에 대하여 36일의 지체일수를 적용하여 금 12,263,370원의 지체상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A는 이 사건 공사는 ○○고등학교를 신축하는 공사로서 분리 독립된 여러 개의 구조물을 순차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실동과 특별동을 동시에 건립하는 단일공사인데 예산의 분기별 배정에 의하여 차수를 분리 계약한 하나의 장기계속계약이므로 공기의 준수 여부는 각 차수별 공기가 아니라 전체 공사의 공기를 전체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A는 전체 공사의 최종 준공일자(제3차 공사의 준공일자와 같다)인 2002. 11. 8에 준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준공을 지체한 것이 아니며 또한 계약서에도 차수별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장기계속공사를 예산배정 등의 사유로 차수를 나누어 계약하는 경우, 그 준공의 지체 여부는 개별 차수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지체상금의 면제 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가 이 사건 ○○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제1차 공사와 제2차 공사를 각 그 준공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각 2002. 9. 16에 준공하였으므로 B가 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제1차 공사의 경우 B가 부과한 지체상금액 379,189,170원은 너무 과다하여 그 중 37,918,917원은 이를 A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